

環 境 衛 生 課

보 고 순 서

1. 환경보전의식제고 및 자연보호운동 추진 3
2. 환경개선부담금 부과·징수 4
3.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및 하천수질관리강화 5
4. 자동차배출가스 줄이기 대책 7
5. 시민건강을 위한 유해식품 근절 추진 8
6. 유해우려업소 지도단속 9

1. 환경보전의식제고 및 자연보호운동 추진

주민의 환경보전의식 고취를 통해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자연보호운동을 전개하여 쾌적한 시민생활공간을 조성하기 위함

□ 추진개요

- 환경보전중점지도학교 지정 운영 : 5개교 (초등학교)
- 환경기초시설 현장견학 : 12회 600명
- 자연보호캠페인 및 국토대청결운동 전개 : 년 17회
- 환경보전글짓기 대회 개최(초등학생)

□ 세부추진계획

- 환경보전중점지도학교 지정 운영
 - 지정시기 : '99. 2월중
 - 대 상 : 관내 초등학교 5개교
 - 지원내용 : 환경홍보관 견학 및 환경보전 홍보물 배부 등
 - 협 조 : 광주광역시서부교육청
- 환경기초시설현장 견학
 - 기 간 : '99. 2. ~ '99. 11.(10개월간)
 - 대 상 : 관내 일반주민 및 초등학교 학생 등
 - 장 소 : 하수종말처리장, 동양맥주광주공장, 위생매립장 등
 - 인 원 : 12회 연 600명
-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 전개
 - 장 소 : 금당산 및 풍암제 등 관내 취약지역
 - 대 상 : 학생, 주민, 일반단체, 공무원 등
 - 참여인원 : 17회 연 15,000명
- 환경보전글짓기 대회
 - 기 간 : '99. 8. ~ '99. 10.
 - 대 상 :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
 - 심 사 : 광주서부교육청
 - 시 상 : 10~15명
 - 소요예산 : 1,000천원('99 제1회 추경에 반영)

2. 환경개선부담금 부과·징수

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및 자동차를 대상으로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년2회 부과하여 국가적 환경기초재원을 확보하기 위함

☐ 추진개요

- 부과시기 : 년2회 (3월, 9월)
- 대 상
 - 시설물 : 연면적 160㎡ 건축물(주거용 제외)
 - 자동차 : 경유사용 자동차

☐ 세부추진계획

- 부과대상 : 15,500여 건 (시설물 : 1,500 자동차 : 14,000)
- 시설물 기초 자료조사
 - 시 기 : '99. 1월, 7월
 - 조사내용
 - 부과대상 시설물 일반현황
 - 부과기준기간내 용수 및 연료사용량 등
-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입력 및 고지서 출력 - '99년 2월, 8월
-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부 - '99년 3월, 9월
-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 송부 - '99년 5월, 11월
- 고액채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- '99년 6월, 12월

☐ 문제점 및 대책

- 전담인력 부족으로 부과대상시설 등 기초자료 조사 애로 및 송달에
우편요금 과다소요
⇒ 공공근로요원 활용 및 동사무소 인력지원

3.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하천수질 관리강화

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하천수질의 관리강화로 각종오염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기여하기 위함

□ 관 리 대 상

- 배출업소 : 204개소 (대기52, 수질146, 소음1, 공통5)
- 비산먼지사업장 : 86개소(일반20, 특별66)
- 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시설 : 9,101개소
(오수정화시설 298, 단독정화조 8,795 축산폐수시설 8)
- 토양오염유발시설 : 43개소
- 하천감시구간 : 20.4km(영산강 11.6km, 광주천 8.8km)

□ 세 부 추 진 계 획

-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
 - 정기점검 및 민원유발시 수시점검 : 년 1~4회 (등급별 점검)
 -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 적용시설 오염도 검사 (상반기중) : 38개소
 - 청정연료사용대상 공동주택 연료전환 홍보 : '99. 3 ~ '99. 5 (3개월), 3개소
-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점검
 - 대규모공사장 주변 먼지오염도 측정 : 월1회 (시보건환경연구원 합동)
 - 구 자체점검(분기별 1회) 및 시·구 합동점검(반기별 1회)

○ 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시설 관리

○ 오수정화시설 지도점검(하수처리구역외) : 20개소

○ 단독정화조 관리

- 내부청소 미이행자 이행 촉구 및 과태료 부과(월1회)

- 건축사 대행 준공정화조 점검(수시)

- 위생업 허가 관련 정화조 점검(수시)

· 축산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 : 16개소

○ 하천감시구간 순찰 및 수질오염사고대비 방제훈련 실시

○ 1일 2회 하천순찰(공무원, 공익근무요원)

○ 방제훈련 2회 (4월, 10월) 실시

□ 문제점 및 대책

○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환경보전의식 부족 및 자율관리 능력 부족으로

환경오염 피해 우려

⇒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현장확인으로 각종 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

하고 자율적인 관리자질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기술지도 병행실시

○ 대기배출허용 기준이 강화 적용되어 배출허용 기준초과 사업장

증가 우려

⇒ 현장점검시 시설이 노후되어 효율이 저하되는 업소는 자율적으로

정비토록 계도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 최소화

4.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 대책

대기오염의 70~80%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배출가스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수준을 유지

□ 추진 개요

- 단속목표 : 운행차 단속 10,000대, 무료점검 10,000대
- 배출가스 줄이기 가두캠페인 및 주민홍보

□ 세부 추진 계획

- 지도단속전담반 편성 운영 - '99. 3월부터
 - 인력확보 : 7명(환경7급1, 기능직3, 운전원1, 공익요원2)
 - 장비보강 : 2종 5점(단속차량1, 무전기4), 측정장비는 기존장비 활용
 - 단속내용
 - 매주 5일 이상 운행차량 단속 및 무료점검
- 소요예산 : 26,300천원 ('99. 제1회 추경에 반영)
- 배출가스 줄이기 가두 캠페인 및 주민홍보
 - 기 간 : '99. 1월 ~ '99. 12월 (년중실시)
 - 장 소 : 신세계 백화점앞 및 광천터미널 등 다중통행장소 선정

□ 문제점 및 대책

- 단속현장에서 차량유도시 안전사고 발생우려
 - ⇒ 단속공무원의 철저한 교육과 유도요원 배치(경찰서 협조)로 안전사고 예방
-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 인식부족으로 오염물질 배출 증가
 - ⇒ 대중교통이용하기, 자전거 이용 및 걷기운동 등 환경친화적 교통 문화 정착유도 및 지속적인 홍보로 배출가스 저감

5. 시민건강을 위한 유해식품 근절 추진

식품제조·가공판매업소 위생시설을 향상시키고 부정불량식품의 제조유통 행위를 근원적으로 사전 차단하여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함

☐ 관 리 대 상 - 478개소

- 식품제조가공업 : 274개소(제조업 18, 즉석판매제조가공업 256)
- 식품운반판매업 : 204개소(식품판매 178, 식품운반업 2, 소분업 24)

☐ 세 부 추 진 계 획

- 점검반 운영 : 3개반 17명(구 감시원5, 명예감시원10, 위생업무공공근로요원 2)
- 점검사항
 - 유통기한경과제품 및 무허가제품 진열판매
 - 과대광고 및 과대포장 여부
 - 표시기준위반 및 부패·변질식품등 보관 판매 상태
 - 성분배합기준 및 제조공정 점검
-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: 약 270건
 - 김치류, 젓갈류, 콩나물, 두부류, 식육제품, 면류, 식용유지류등

☐ 문제점 및 대책

- 영세 식품판매업자 및 소비자 부정·불량식품에 대한 식별능력 부족과 신고정신 결여
 - ⇒ 부정·불량식품 제조업체 추적 및 홍보활동 강화,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부정·불량식품 수거 및 유통경로 차단

6. 유해우려업소 지도단속

유해우려업소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으로 건전한 영업풍토 정착과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

□ 관 리 대 상 - 3,157개소

- 공중접객 : 904개소(숙박 143, 목욕 54, 이용 171, 미용 458, 컴퓨터게임장 78)
- 식품접객 : 2,253개소(일반 1,868, 단란 114, 유흥 46, 휴게 225)

□ 세 부 추 진 계 획

- 전업소 획일적인 단속을 지양하고 문제업소 위주 집중단속 : 20개소
- 유해우려업소에 대한 불시단속 : 월 1회이상
- 행정처분업소 사후관리 철저 : 주 2회이상
- 카드관리(취약지역, 상습고질업소, 무허가업소) : 월 1회
- 영업자 단체를 통한 자율지도활동 강화 : 년 2회
- 시, 경찰 등 합동단속 실시 : 월1회

□ 문제점 및 대책

- 단속체계의 이원화로 인한 범의 허점 이용(경찰적발후 행정처분 전에 자진폐업, 명의변경을 통한 행정처분 면탈행위)
 - ⇒ 폐업이나 명의변경등 신고시 유관기관에 사전조회하여 처리
- 업주와의 잦은 마찰 및 곱지 않은 시각으로 사기저하
 - ⇒ 업주교육 강화 및 공무원 직무교육 강화(수시 또는 분기별)